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531

발의연월일: 2022. 5. 9.

발 의 자:정점식·정운천·김태호

윤재갑 • 김용판 • 하영제

홍문표 • 유경준 • 조수진

유의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적 근거 한계로 인하여 단순 산림사업에 한정하여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관리대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아울러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공유림 및 사유림(이하 "공·사유림"이라 함)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책임성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이에 공·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36조의2 및 제67조제1항).

법률 제 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3조의4(산림사업 관리대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그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를 대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대행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관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 관리대행 비용을 현

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자의 산림사업 관리를 지도·감독 하며, 관리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대행자로 하여금 산림사업 관리 업무 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 중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
- 3.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67조제1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3.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사업 관리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대행자로 지정하 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23조 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림사업 관리대행 기관 또는 단체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3조의4(산림사업 관리대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 대하여는 산림조합 등 대통 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 를 지정하여 그 관리를 대행 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를 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관 대행자"라 한다)가 다음 각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으로 관리대행 지정을 은 경우

- 2.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3. 제4항에 따른 관리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 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사업 관리대행

 법으로 산림사업 관리대행

 비용을 현저히 증가시켜 청구한 경우
-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대행자의 산림사업 관리를 지 도·감독하며, 관리대행에 필요 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 대행자로 하여금 산림사업 관 리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 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 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자의 자격기준, 지정절차, 업무 범위 및 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에 드는 비용의 지급 등에 필요한

원 의제)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 · 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 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 진흥원의 임직원과 제36조제10 항에 따라 확인 ·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 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 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7조(보고·검사 등) ① 산림청 | 제67조(보고·검사 등) ①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 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공유 림 또는 사유림의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
- 2. 제34조제6항에 따라 관리・ 평가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임업진 흥원의 임직원
- 3. 제36조제10항에 따라 확인 점검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

구청장 및 지방산림청장은 산 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게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명하거 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사업장·사무소 등에 출 입하여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검사하거나 관계 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 3의2. (생 략) <신 설>

4. ~ 7. (생략)

② ~ ⑤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제23조의4에 따라 산림사
업의 관리를 대행하는 자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